

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30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황운하 · 차규근
이해민 · 허성무 · 박은정
김준형 · 전용기 · 신장식
백승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,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, 입학·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중도입국 학생,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이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국적, 한국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어학급의 운영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교육감은 특정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마. 밀집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,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, 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

구축·운영하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
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주배경학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.

가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학생

나.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

2. “밀집학교”란 학교 중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
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총괄하며, 교육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관한 시책을 시행할 때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여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호자와 교원은 이주배경학생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제6조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밀집 현상 완화 및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
4. 제10조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
5.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국적, 한국어 역량, 교육 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범위,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맞춤형 교육지원의 실시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국적, 한국어 역량,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한 한국어학급의 운영
2.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프로그램 보급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
3.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심리·정서 상담 지원
4.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교육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특화된 현장실습 및 취업 교육 지원
5. 조기 적응 지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제도 안내 및 교육 지원
6. 그 밖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이주배경학생의 균형 배치) ①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특정 학

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배치 계획에는 신규 입학·전학 학생을 인근 학교에 균형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밀집학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한 교원 추가 배치
2. 한국어 강사, 다문화언어 강사 등 보조 인력의 채용 확대
3. 밀집학교 특성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지정 및 예산 지원

제9조(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밀집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아닌 학생의 통합 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
2.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및 밀집학교 현장실습 확대
3. 밀집학교 장기근무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해외 교류 등 제공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협력 체계 구축) ①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,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이주배경학생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